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8 (화) 평창군수(농정과장)
- 나. 회부일자 : 2005. 10. 25(화)
- 다. 상정일자 : 2005. 10. 25(화)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

2. 제 안 이 유

- 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우리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여 우리군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 요 골 자

- 가.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평창군농특산물품질 관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둠. (안 제9조)
- 다.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원은 현지여건을 조사·심사함. (안 제10조)
- 라. 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생산된 농·특산물에 한함. (안 제12조)
- 마.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출하·유통 과정을 조사할 수 있음. (안 제13조)

4. 검토 결과

가.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나. 조례 검토결과

- 안 제3조에서 평창군수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상표법 제41조"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평창군 특허청 등록 상품 총 26류 369품목 중 5개류 95품목
- 안 제13조 제2항에 사후관리에 따른 생산자에 대한 "변상조치"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에게 평창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감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다 명확한 대응 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원번호]	40-2000-0032098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1-0034085	[공고일자]	2001 09 07
[등록번호]	0508501	[등록일자]	2001 12 11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윤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01 류 왕겨비료, 뽕밭비료, 퇴비비료, 혼합유기질비료, 공업용 김지기루, 공업용 매밀기루, 공업용 옥수수기루, 공업용 콩기루, 공업용 현미기루, 옥제펄프.		



[출원번호]	40-2000-0032099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1-0034086	[공고일자]	2001 09 07
[등록번호]	0508746	[등록일자]	2001 12 13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윤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03 류 헤어로션, 헤어무스, 향수, 기루비누, 공업용 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샴푸, 세탁비누, 치약.		



[출원번호]	40-2000-0032100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1-0016192	[공고일자]	2001 05 02
[등록번호]	0499836	[등록일자]	2001 08 21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윤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06 류 금속제간판, 금속제등록번호판, 금속제명패, 금속제기념컵, 금속제기념패, 금속제저금통, 금속제버클, 금속제행사, 향동제조각.		



[출원번호]	40-2000-0032101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1-0032196	[공고일자]	2001 08 16
[등록번호]	0508498	[등록일자]	2001 12 11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윤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08 류 칫스폰, 숟가락, 스푼, 양식용 나이프, 포크, 식칼, 손톱가위, 손톱깎기, 전기면도기, 전기식 손톱깎기.		



[출원번호]	40-2000-0032102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1-0034087	[공고일자]	2001 09 07
[등록번호]	0508502	[등록일자]	2001 12 11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훈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114 류 귀금속제 기념품, 귀금속제 기념패, 패종시계, 전지시계, 탁상시계, 팔목시계, 귀금속제 배지, 벡타이판, 메달, 타이클립,		



[출원번호]	40-2000-0032103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1-0023839	[공고일자]	2001.07 14
[등록번호]	0505313	[등록일자]	2001 11 0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훈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116 류 납린용지, 포장용지, 화장지, 화장실 휴지, 봉투, 서류봉투, 수첩, 만년필, 볼펜, 시인펜, 풀핀지상자, 종이재상자, 그림엽서, 달력, 민화책, 비자기식 전화카드, 연하장, 정기간행물, 티켓, 팜프렛,		



[출원번호]	40-2000-0032104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1-0023840	[공고일자]	2001 07 14
[등록번호]	0505310	[등록일자]	2001 11 0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훈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118 류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것), 동산백, 비금속제 지갑, 여행기방, 학생기방, 핸드백,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지(紙)우산.		



[출원번호]	40-2000-0032105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1-0023841	[공고일자]	2001 07 14
[등록번호]	0505307	[등록일자]	2001 11 0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훈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120 류 시장비구니, 공기팽창식경고음, 목재 또는 플라스틱재 간판, 비금속제 등목판, 비금속제 기권번호 표시용 표찰, 비금속제 명패, 비금속제 번호판, 비금속제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출원번호]	40-2000-0032106	[출원일자]	2000 07 03
[광고번호]	2001-0032197	[광고일자]	2001.08 16
[등록번호]	0508497	[등록일자]	2001.12.11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21 류 향수버너, 향수분무기, 칫솔, 쓰레기통, 비금속제 저금통, 종이접시, 종이컵, 음료용병, 플라스틱 병, 식료 용품.		



[출원번호]	40-2000-0032107	[출원일자]	2000 07 03
[광고번호]	2001-0016193	[광고일자]	2001 05 02
[등록번호]	0499835	[등록일자]	2001 08 21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25 류 아동복, 유아복, 자켓, 잠바, 청바지, 파카, 단화, 스포츠셔츠, 운동용유니폼, 조끼, T셔츠, 넥타이, 스키프, 양말, 모자, 복대.		



[출원번호]	40-2000-0032108	[출원일자]	2000 07 03
[광고번호]	2001-0023842	[광고일자]	2001 07 14
[등록번호]	0505315	[등록일자]	2001 11 0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26 류 기발, 머리핀, 비귀금속제 배지, 헤어밴드, 원장, 워장, 단추, 조화(혼상용 조화회원은 제외).		



[출원번호]	40-2000-0032109	[출원일자]	2000 07 03
[광고번호]	2001-0030555	[광고일자]	2001 08 11
[등록번호]	0505314	[등록일자]	2001 11 0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29 류 빵, 롤,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보존처리된 망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잼이찌, 두부, 포테이토칩,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닭갈, 소시지, 햄, 요구르트, 우유, 유산균음료, 식용 알기름, 식용 옥 수수기름, 식용 헝기름, 식용 콩기름, 영태, 건재이게류, 훈제어게류.		



[출원번호]	40-2000-0032110	[출원일자]	2000 07 03
[광고번호]	2001-0032198	[광고일자]	2001 08.16
[등록번호]	0508905	[등록일자]	2001 12 17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원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30 류 쌀, 식용 김지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콩가루, 크수, 빈대떡, 전, 캔플레이크,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출원번호]	40-2000-0032111	[출원일자]	2000 07.03
[광고번호]	2001-0045706	[광고일자]	2001.12.01
[등록번호]	0515688	[등록일자]	2002 03 2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원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31 류 꽃, 나무, 잔재, 생화.		



[출원번호]	40-2000-0032112	[출원일자]	2000 07 03
[광고번호]	2001-0032199	[광고일자]	2001 08 16
[등록번호]	0508500	[등록일자]	2001 12 11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원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32 류 음료용 아채주스, 사과주스, 토마토주스, 포도주스, 오렌지주스, 인삼주스, 광천수, 생수, 인공광천수, 맥주		



[출원번호]	40-2000-0032113	[출원일자]	2000 07 03
[광고번호]	2001-0027021	[광고일자]	2001 07 20
[등록번호]	0505309	[등록일자]	2001 11 0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원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33 류 소주, 막주, 탁주, 메실주, 머루주, 배술, 포도주, 벌꿀주, 약용주, 토양주,		



[출원번호]	40-2000-0032114	[출원일자]	2000.07.03
[공고번호]	2001-0023843	[공고일자]	2001.07.14
[등록번호]	0505308	[등록일자]	2001.11.0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소재지]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훈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 34 류 | 각초(刻草), 씹는담배, 권연, 잎담배, 비금속제 담배파이프, 비금속제 재떨이, 성냥, 직연용 라이터.

[출원번호]	40-2000-0045833	[출원일자]	2000.09.29
[공고번호]	2001-0039889	[공고일자]	2001.10.29
[등록번호]	0512576	[등록일자]	2002.02.18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소재지]	한국
[대리인명]			
[한글상표]	국민의고향평창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 31 류 | 김지, 양파, 당근, 배추, 무, 양배추, 풋고추, 호박, 피망, 토마토,

[출원번호]	40-2001-0036599	[출원일자]	2001.08.21
[공고번호]	2002-0038987	[공고일자]	2002.09.11
[등록번호]	0541133	[등록일자]	2003.02.08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소재지]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훈허법민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 31 류 | 옥수수, 매밀, 김지, 고추, 당근, 무우, 배추, 순이버섯, 양배추, 양파, 토마토, 피망, 배, 복숭아, 사과, 수박, 참외, 포도, 농산물 가공품, 시탕수수,

[출원번호]	40-2002-0027559	[출원일자]	2002 06 14
[광고번호]	2003-0044230	[광고일자]	2003 08 25
[등록번호]	0567878	[등록일자]	2003 12 05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정윤석허법인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05류] 농산물(유제품), 축산물(유제품), 유아용분유, 분쇄커피, 생약, 의료용세정제, 의약품(약초), 콘택트렌즈 세척제, 콘택트렌즈용 용액, 약제용 시럽, 인대. [30류] 옥수수조청, 곶감가루, 메밀차, 오기피차, 구기자차, 마기목차, 신초가루, 김정, 백향족, 메밀씨과, 커피를 혼합한 차(茶), 쌀. [31류] 김취, 취니움, 근드레, 고사리, 참니움, 치커리, 청경채, 심엽채, 근대, 숙갓, 아욱, 비트, 케일, 신랄초, 멘디프, 브루셀라, 폴리폴리워, 느티리, 더덕, 절구상추, 피프리카, 시금치, 아콘.		



[출원번호]	41-2000-0018949	[출원일자]	2000.07.03
[광고번호]	2002-0012987	[광고일자]	2002 04 03
[등록번호]	0077433	[등록일자]	2002 07 16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35류] 광고기획업, 옥외광고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호텔경영업, 주유소경영업, 마케팅서비스업, 직업소개업, 직업발전업.		



[출원번호]	41-2000-0018950	[출원일자]	2000 07 03
[광고번호]	2001-0042887	[광고일자]	2001 11 10
[등록번호]	0074497	[등록일자]	2002 03 2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36류] 농장관리업, 세무상담업, 공인중개사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슈퍼마켓관리업, 주택관리업.		



[출원번호]	41-2000-0018951	[출원일자]	2000 07 03
[공개번호]	2002-0012988	[공개일자]	2002 04 03
[등록번호]	0077437	[등록일자]	2002 07 16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37 류 농업용기구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방역소독업, 보안리청소업, 세차업, 세탁업, 건관도색업, 실내정식업, 주방기구설치업, 사무기기설치관리업.		



[출원번호]	41-2000-0018952	[출원일자]	2000 07 03
[공개번호]	2002-0012989	[공개일자]	2002 04 03
[등록번호]	0077436	[등록일자]	2002 07 16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38 류 교통방송업, 무선텔레비전 방송업.		



[출원번호]	41-2000-0018953	[출원일자]	2000 07 03
[공개번호]	2002-0012990	[공개일자]	2002.04 03
[등록번호]	0077435	[등록일자]	2002.07 16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39 류 건인업, 관광업, 버스운송업, 쓰레기운반업, 이삿짐운송업, 택배업, 택시운송업, 폐기물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중개업, 생산물창고업, 보물창고업, 후산물창고업, 꽃배달서비스업.		



[출원번호]	41-2000-0018954	[출원일자]	2000 07 03
[공개번호]	2001-0042888	[공개일자]	2001.11 10
[등록번호]	0074496	[등록일자]	2002 03 22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 선 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40 류 과일가공업, 채소가공업, 도정업, 도축업, 제재업, 쓰레기소각업, 쓰레기처리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사진 필름현상업.		



[출원번호]	41-2000-0018955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2-0012991	[공고일자]	2002 04 03
[등록번호]	0077434	[등록일자]	2002 07 16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41류] 유치원경영업, 영어학원경영업, 미술학원경영업, 음악학원경영업, 한식학원경영업, 영문기술지도원경영업.		



[출원번호]	41-2000-0018956	[출원일자]	2000 07 03
[공고번호]	2002-0012992	[공고일자]	2002 04 03
[등록번호]	0077439	[등록일자]	2002 07 16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42류] 법학경영업, 해운시업, 조류업, 식재료업, 민업서비스업, 인쇄업, 범우시업, 변리시업, 변호사업, 행정사업, 병원업, 마포업, 의생업, 치과업, 한의원업, 간식산업, 관광음식점업, 나이트클럽업, 디방업, 레스토랑업, 무단유출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셀프서비스산업, 식당제인업, 일반유출주점경영업, 재과점업, 햄점점업, 카페업, 한식점점업, 휴게실업, 무형업, 여권업, 유스호스텔업, 렌도미니업, 호텔업, 호텔업, 미용업, 미용실업, 렌노수거처리업, 원유원업, 예식점점업.		



[출원번호]	42-1998-0000189	[출원일자]	1998 12 03
[공고번호]	1999-0019610	[공고일자]	1999 08 02
[등록번호]	0000546	[등록일자]	1999.10.11
[원등록번호]		[원등록일자]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자]	
[우선권]			
[출원인명]	평창군	[국적]	한국
[대리인명]	이인실,이철,염승환		
[한글상표]			
[영문상표]	Happy700		
[지정상품]	[113류] 지방자치단체구호, 조식 행정관리에관한업무, 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업무, 농업 신업진흥에관한업무, 도시개발 지역개발에관한업무,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체육진흥에관한업무, 지방세부과징수 공유재산관리업무, 교통도원관리 하천관리업무, 민생봉사실업무, 민방위예관한업무, 환경관리업무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안

의안 번호	18A
----------	-----

제출년월일 : 2005. 10. 1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우리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여 우리군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평창군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안 제9조)
- 다.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원은 현지여건을 조사·심사 한다. (안 제10조)
- 라. 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생산된 농특산물에 한한다. (안 제12조)
- 마.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 과정을 조사할 수 있다.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입법예고 : 실시(6.24 ~ 7.14)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음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라. 관련부서 협의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05.7.22)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평창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수 품질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평창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전통식품으로서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인증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3.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①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평창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품질관리 대상품목의 결정
2. 인증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6.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기술개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출장소장,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군수는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품질관리) ①군수는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품질관리원의 자격·위촉·해촉·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군수는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①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승인)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인증상표사용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인증상표 사용심사, 인증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인증상표 유효기간) ①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표를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가공품의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부터 생산을 10월 이상 중단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이 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①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인증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증상표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부정사용의 조치) ①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6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평창군 인증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

(제2조 관련)

1. 인증상표(가로×세로의 비율은 9.5×4.0)



2. 작도법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 · 포장 · 용기의 크기 · 형태 ·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한다

나. 색깔 : H ~ DIC198p / C15% + M100% + Y100%

A ~ DIC148p / C60% + M80%

P ~ DIC182p / C100% + M50%

P ~ DIC162p / M50% + Y100%

Y ~ DIC170p / C40% + Y100%

700평창 ~ DIC653p / K60%

※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형태 또는 색깔의 임의변경은 금지되며, 최소 사용규정은 20mm임.

관 계 법 령

□ 상표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나. 가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라 함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5.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6.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전용사용권) ①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업무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④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⑥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7조 (통상사용권) ①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 ④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제54조제5항·제5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평창군상표사용권사용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권" 이라 함은 평창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업무표장" 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3. "상표" 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4. "서비스표" 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5. "상표의 사용" 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전용사용권자" 라 함은 상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7. "통상사용권자" 라 함은 상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12조(상표사용 전담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고 상표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이하 모든 부서에서의 상표사용 및 타인, 타 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사용전에 전담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용한다.

□ 식품위생법

제13조 (위해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